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0조 ·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별표 10] ·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시행규칙 별표 10)

구분	기준
삽입손실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 최소 7dB 이상
높이	3m 이상
흡음형 설치 의무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립 등이 있어 방음벽에 의한 소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조 관리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 없을 것
누출 방지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 없이 소음 누출 방지

○ 교통소음 방음시설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음원: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고, 음원 높이는 노면 위 0.5m를 표준으로 함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 위 0.5m보다 높은 경우 그에 맞게 조정)

저감 목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음환경기준(가 50dB / 나 55dB / 다 60dB / 라 65dB) 적용

방음벽 종류: 반사형(알루미늄·아크릴·콘크리트 등), 흡음형(다공질 흡음재+방음판), 녹색형 등. 반사피해 우려 지역에는 흡음형 적용

방음판 투과손실(TL)은 설계 저감량 이상 확보, 하부 틈새 누설 방지, 끝단 연결부 처리 필수

방음시설 성능·설치기준의 상세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름

○ 소음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단위: Leq dB(A))

구분	지역 예시	기준
가 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 부지경계	50 이하
나 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 이하
다 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60 이하
라 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5 이하

※ 항공기소음·철도소음·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음

○ 출처 및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EC%86%8C%EC%9D%8C%EC%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EC%86%8C%EC%9D%8C%EC%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음환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me.go.kr> — 환경부 고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검색: 환경부 본부알림)

※ 본 자료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